

### 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7년 06월 01일

웅양면장 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신**	신** 1942-05-21	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노현길	거주불명등록 2017-06-01